작성부서	평택발전본부 복합기계부	공사시방서	발행번호 : '22-신평택-ST-공사 작성일자 : '22. 05. 시행일자 : '22. 05.
공 사 명		발전소 정비편의시설 설치공사	
품 질 등 급	□R, ■S	품 질 보 증 시 방 서 :: □적용, □보완적용, ■비적용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적용, □보완적용, □비적용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평택발전(주) ST, HRSG, GT 안전 정비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표준

2.1 품질등급 : S

2.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전 정비편의시설 제작

3. 공사범위

	항목	ST	HRSG	GT
1	안전 정비편의시설	17	32	2
2	계단형 난간개소	1	-	-
총 합		18	32	2

3.1 ST, GT 안전 정비편의시설 및 밸브인양장치 설치 (1F, 2F, 3F 등)

가. 안전발판 설치(Hand Rail, 발끝막이판, Grating 설치포함) 및 도장

나. 비계설치 및 철거

다. 공사현장 정리

3.2 HRSG 안전 정비편의시설 및 밸브인양장치 설치 (1F, 2F, 3F, 4F, 4.5F 등)

가. 안전발판 설치(Hand Rail, 발끝막이판, Grating 설치포함) 및 도장

나. 비계설치 및 철거

다. 공사현장 정리

담 당	차 장	부 장

4. 일반조건

4.1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대한 제반(재료, 기계, 공사장 및 현장 작업자 감독) 관리에 임해야 하며, 필요한 각종 공사 서류의 작성, 제출과 준공검사 입회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출타 시 3일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시공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나. 이 공사의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점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완벽한 공사를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의 증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 요구 시 즉시 조치하여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시한 공사 설명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정비 범위내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행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사항을 공사 공정별 촬영하여 사진철로 작성,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사진대장을 제출 할 시 외부 제작공정 및 현장 설치 공정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한다.

바. 중요한 공정이나 공사 시행을 위한 일일 작업지시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공사 진행 및 계획에 대한 일일 작업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공사비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책임각서, 공사인부 출입허가신청서 및 차량출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확 인	

4.3 **공사설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도면 및 현장조건(설치장소 및 접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의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나.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는 공사 착공 전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작업자는 발전소 특성상 요구되는 설비안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설계서에 포함된 지입자재는 시설물 설치 전까지 검수, 완료되어야 한다.

라. **착공 전까지 현장 사전 검토 후 종합공정표, 작업계획서, 작업자명단, 일일공정 보고양식 등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현재 공사범위 내 설치된 비계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강 및 안전난간을 추가로 설치한다.

바. 고소위치 공사이므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하며, 낙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표시 및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사. 자재 및 장비의 운반 시 시설물의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현물로 원상복구 한다.

아. 공사에 사용될 자재와 장비는 발전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질서 정연히 보관하고, 환경 및 기후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자. 공사기간 중 공사내용이 명시된 공사안내판 설치 및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장 모든 구간에 걸쳐 안전띠와 Post를 설치한다.

차. 공사기간 중 현장용접을 제외한 용접, 절단, 가공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작업장을 이용하여 선제작 후 반입하여 최종 조립시에만 현장설치를 하도록 한다. 단 현장가공이 필요한 개소에 경우 공사감독원에 문의하여 협의 후 그 결정에 따라 작업한다.

카. 도색의 도막두께는 KS M 6030 잡철물 등의 도색에 따르며 도막두께 40um 이상으로 도장한다. 또한 핸드레일 및 발판 등 기타 부속품의 경우에도 노랑색(Y20) 색상으로 도장하며 현장과 동일한 색상을 기준한다.

타. 현장 용접부에 대한 전 범위 자분탐상(MT)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확 인	

파.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원에 문의하여 협의 후 그 결정에 따라 작업한다.

4.4 **설비보호**

가. 공사 수행 시 작업범위 전 영역에 걸쳐 발전설비 보호에 주의를 기한다.

나. 운전 중인 설비에 접근하여 작업 시 운전 중인 설비 보호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 보호시설 설치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미비사항 발견 시 발주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인한 설비 및 건물손상은 지체없이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라. 기타 설비 보호를 위해 작업장 주변에 천막 등을 설치하여 공사 중 이물질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화재예방 및 주변설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차폐막을 설치, 철거하며 유해가스 제거 및 분진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바. 위 사항은 작업 전 반드시 발주자에게 조치사항을 승인받은 후 공정을 진행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시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아.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서류제출,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공정관리

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5.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 할 수 없으며, 공정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공기지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5.3 중요한 공정이나 공사 시행을 위한 일일 작업지시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하고 공사 진행 및 계획에 대한 일일작업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작업사항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4 사진촬영은 작업공정별로 촬영하여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공사비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책임 기술자 선임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확 인	

6. 자재관리

6.1 자재 관리

(1) 불출된 자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인수받은 후 품질 확보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2) 불출된 자재가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즉시 부담하여 조달한다.

6.2 기 타

(1) 옥외에 보관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으로 고이고 천막으로 덮어야 한다.

(2)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나 진동이 심한 곳에 자재를 보관해서는 안된다.

(3) **비계설치를 위한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조달한다.

(4) **안전장구**는 발주자의 검수를 받고 현장에 비치한다.

7. 노무관리

7.1 계약상대자에 고용된 작업자의 노무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통행 및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7.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에 동원하고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심사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응해야 한다.

7.3 발주자는 각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능공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확 인	

8. 작업 안전관리

8.1 본 공사는 신평택발전 발전설비의 정상운전 기간 중에 시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발전설비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 본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작업, 시공장비 운반 및 설치, 공사 시행방법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취급규정,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 된 사고로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때 이로 인한 보상 및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8.4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5 계약상대자는 특히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곳의 작업은 충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된 모든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6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7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8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8.8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고리결속을 의무화하고 안전고리 결속 장치가 없는 곳에서는 안전줄을 설치하여 결속한다.

8.9 화기작업시에는 별도 화기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화기감시자는 별도의 지정된 업무 외 기타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10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시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을 요구할 수 있다.

8.1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된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할 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8.12 기타 안전에 관련한 미비사항 발견 시, 발주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즉시 따라야한다.

확 인	

8.13 현장 투입 인원 중 신규 채용자는 별도 공사감독원에게 공지하고,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알려야 한다.

8.14 모든 작업시 작업관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추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한다.

9.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현장에 종사 할 작업자의 정문출입을 위한 출입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를 경유, IT 보안팀에 제출하여 정문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종 보안시설 및 기타 불필요한 곳의 출입을 절대 금하며 작업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0. 소방관리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법에 준 하는 소방대책을 강구하고 화재 발생시 화재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11. 환경오염방지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는 특히 해양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일일 작업 후 작업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11.5 공사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일반 및 특정폐기물)은 발생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분리 수거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위치에 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11.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발생한 공사 잔 자재는 고철만을 분리하여 지정된 고철장에 입고 하여야 한다.

확 인	

12. 기타

12.1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동력 및 조명용 전력, 식수, 압축공기, 작업용수 등을 당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본 설명서 및 특기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며 발주자의 승인 사항이라도 결함 발생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수정, 보완한다.

13. 품질보증

계약자는 자주적인 품질보증활동으로 구매 물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사통합 품질보증시방서를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

14. 공사기간 : 착공 후 60일

15. 준공

15.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당사 준공검사원의 입회하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제출시 작업공정별로 준공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5.3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하자보증

16.1 하자보증 기간 : 준공검사 완료 후 1년

16.2 하자보증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발생된 설비변형 및 파손

(2) 기타 시공결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하자

16.3 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발주자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전액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확 인	

17.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수량	제출시기
1	불법 하도급 금지 확인서	1부	계약시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사본	1부	계약시
3	착공계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4	공사비 산출내역서		
5	현장대리인계		
6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 및 책임각서		
7	분야별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8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평가표 (공정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9	안전장구 검수 요청서		
10	지입자재 검수 요청 명세서		
11	일일작업일보	1부	매일
12	준공계 및 준공검사 요청서(아래 서류 포함) - 공정사진대장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2부	준공시
13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2부	준공검사 완료후

※제출부서 : 신평택발전 담당자, 한국서부발전 복합기계부

붙임 안전계약특수조건 1부. 끝.

확인	